

'93. 제1회 7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임시험 최종합격자발표및 동 임용후보자 등록요령공고

93. 8. 8일 시행한 7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3. 10. 11.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1. 합격자 명단 : 별 지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93. 10. 11 ~ 10. 27 (15일간)

나. 등록처 : 충청남도 지방과 행정계

다. 구비서류

- | | | | |
|----------------------------------|-------|-----|---|
|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 ----- | 2 | 통 |
| 2) 호적등본. 초본(호적편제 사유와 신분사유가 기재된것) | ----- | 각 1 | 통 |
| 3) 신원증명서(시. 구, 읍. 면장 발행) | ----- | 1 | 통 |
| 4)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이 기재된것) | ----- | 1 | 통 |
| 5) 학력증명서(최종출신학교) | ----- | 1 | 통 |
| 6)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자에 한함) | ----- | 1 | 통 |
| 7)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 | ----- | 4 | 통 |

라. 등록요령

- 1) 등록원서는 등록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하여야 함.
- 2) 등기우송시는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 할것

마. 유의사항

- 1)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이어야 함.
 - 2) 임용후보자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처(지방과 행정계)로 문의바람.
- ※ 전화 : (042) 251-2223

원본대조	
직	지방행정부서관
성명	산병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가)

충청남도 행정직 7급 공채시험에서 도의 본인에 대한 [원손지체장애자, 병역면제자, 시험번호399, 평균점수78.33(가점불포함점수), 합격선82.22(가점포함점수)] 불합격처분은

- 1) 적용하여야 할 헌법 11조 1항, 헌법 34조 5항, 협법 37조 2항,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 2~3항, 동법 시행령 31조, 동법 시행규칙 34조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무이행 하였고 도가 장애인 고용 계획을 위법 부당하게 적용하였다.
- 2)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자격증소지자들에게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0조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점수를 가산하였고 장애인(병역면제자)인 본인에게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았다.
- 3) 그 결과 헌법과 법률은 장애자를 차별하지 않았으나 도의 위법부당한 기속재량권을 남용한 법률의 적용과 위법부당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적용으로 장애인 평등권 취업균등의 기회를 침해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서 협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규정한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공개채용 시험의 실시이행 의무는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법률제도와 그적용 시행상에서 장애인 취업균등의 기회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2) 그러나 도는 7급 행정직 공개경쟁 시험에서 헌법과 법률의 강행규정,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헌 위법부당한 장애인 고용계획을 시행하므로써 법률이 보장 한 가장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취	본	대	조
의	장	행	정
의	장	행	정
의	장	행	정

3) 즉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 ① 5급 공개경쟁 시험처럼 병역필자(정상인) 가점제도 없이 반대 해석하면 병역면제자(장애자) 가점제도 없이 법률상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시험을 보도록 하거나 2. 9급 공개 경쟁시험 처럼 정상인(병역필자)에게 가점제도를 적용하고 장애인(병역면제자)에게 장애인 채용시험 실시제도를 적용하여 법률상 장애인도 정상인과 균등하게 취업 기회가 보장되도록 시행하였으면 3. 본인은 이번 7급 경쟁시험에서 위헌 위법 부당하게 불합격 처분을 받지 않을수 있었다.

그러나 5급 시험과 다르게 법률 적용하고 9급 시험과도 다르게 법률적용하므로써 결국 7급 시험에서 법률의 위법 부당한적용(의무불이행)과 장애인 고용계획의 위법 부당한 적용(의무불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을 차별한 명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잘못된 사실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 2~3항 등시행령 31조 등 시행규칙 4조 등에 의하면 드는 93년 공개경쟁시험 계획에서 (93년 1월 공고 9월 10일 불합격 후 위법사실 인지) 공개경쟁 모집인원이 7급(행정 41, 임업5) 9급(행정160, 임업 5, 농업 27, 보지 8, 토목 25) 합계 271인 모집인원중 장애인을 100분의 2이상 즉 271분의 5.42인 이상 선발하여야 하는데 시험시행 계획 공고를 보면 9급 행정직에 4인 만을 선발 하였으므로 도의 장애인 고용계획은 등법 34조 2~3항등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 이고 장애인 고용계획을 적법화 하려면 장애인 1.42인 이상을 더 선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자(병역면제자)수험생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려면 7급 행정직에서 1인을 더 채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 고용계획의 위법부당 사항도 시정되고 도가 헌법과 법률상 의무불이행으로 침해한 수험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다. 관련 법률규정을 보면 도는 9급 행정직에는 이미 4인을 채용하였고 93년도 7급 세무직 50인 공채시험중 1인을 장애자 선발 인원으로 할당하였으므로 직무, 직급, 모집인원등을

원본 대조	
직	재정행정수탁관
명	안 병호

고려한다해도 (본사건의 경우) 7급 행정직 41명중 1명을 장애인에게 할당 하여 시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2) 여하튼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 공채시험관련법률의 적용상 형평성을 상실하고서 위법부당하게 기속재량권을 남용하였으며 위법부당하게 장애인 고용계획을 시행한 여러 사실은 결국은 법률이 보장한 장애인 수험생의 본질적 취업균등 기회(평등권)을 고의과실 여하간에 충청남도가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는 침해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므로 불합격 처분의 무효확인을 신청한다.

처분대조	
시	행정청서무관
성명	안 병 모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을제 7호증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042)

문서번호 인위 12120 ~ 59
 시행일자 1993. 11. . (년)
 (경유) (제 1 안)
 수신 충청남도지사
 참조 법무담당관

취급		위원장
보존		
부위원장		
간사	1115	법무담당관
서기	안병모	송무계장: 현장
기안자	곽근수	

제목 행정심판 청구서 송부 및 답변자료 제출 홍

- 대전직할시 [redacted] 거주 정강용으로 부터 제출한 7급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 결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었는바
- 청구인이 기재한 『피청구인』 및 『재결청』이 잘못기재되어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반증자료 및 답변서(안)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원본 자료
 1. 행정심판청구서 1부
 2. 답변서 2부
 3. 행정심판 수행자 지정서 1부

- 붙임 : 가. 행정심판청구서 1부.
 나. 답변서 2부.
 다. 행정심판 수행자 지정서 1부. 끝.

(제 2 안)

수신 : 정강용 ([redacted])
 제목 : 행정심판청구서 재결송부 통지

'93. 11. 8 귀하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 및 재결청이 잘못 기재 되어 본청구의 재결청인 충청남도 지사에게 이송하였기 그사실을 관계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끝"

검인
 1993. 11. 17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제 8 호 종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042) 251-2132 담당 : 명규식

문서번호 행심 01255-48

시행일자 1993. 12. 7 (10)

(경유)
수신 (제 1 안)
내부결재

참조

취급		위원장
보존	10년	
부위원장	이노 11/3	
간사장	AB	건설도시국장
간사	7/6	
기안	명규식	

제 목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당 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심리.의결을 위해 행정심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93 제8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 일시 : '93. 12. 17 (7). 14:30 ~ 14:00
2. 장소 : 도청 소회의실
3. 안건 (8건)

원본대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안병

- 아산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 서산군,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 ✓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결정처분 취소등 청구
- ✓ 도인사위원회,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 청구
-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변경청구
- 부여군,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변경청구
- 당진군,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변경청구

붙임 :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안건 1 부. 끝.

행심 01255-

(제 2 안)

1993 12 6
부지사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심판청구 안건의 심리 의결을 위해 '93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심판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별첨 심의 안건을 검토하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제 1 안 과 같 음”

붙임 :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안건 1 부. 끝.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수신처 : 각위원(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건설도시국장, 이호종 위원, 유일언 교수
김종선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통지

원본대조	
직	행정행정부서관
성명	안 병

귀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93 제8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청구인이 당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93. 12. 17 (주) 14:00³⁰
2. 장 소 : 충남도청 소회의실 (본관 2층)
3. 사건 및 당사자

사 건 명	청 구 인 대 리 인	피청구인	비 고
○ 93-4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정 순 영	아산군수	
○ 93-43,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행정 징계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최 중 혁	서산군수	
○ 93-44, 개별공시지가 결정결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최 경 순	천안시장	
○ 93-45,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불합 격 처분 취소 등 청구	정 강 용	도 인 사 위 원 장	
○ 93-48,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변경 청구	윤 희 봉	천안시장	
○ 93-49,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변경 청구	권 선 우	부여군수	
○ 93-50,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박 광 기	당진군수	
○ 93-51,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변경 청구	민 병 근	천안시장	

끝.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수신처 : . 더이(도시과장), 10(도서과장), 16(산림과장), 18(도사과장),

19(환경보호과장), 도 인사위원회(총무과장)

. 서울 강남 역삼동 825-53 테헤란빌딩 1003호 변호사 진호근

. 대전 중구 선화동 140-14 변호사 곽노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9 브띠오피스텔 9층 변호사 이상혁

. 대전 서구 도마2동 316-60 정강용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701호 변호사 우창록

. 대전 중구 산성동 759-33 금남여객(주) 권선우

.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467 박광기

. 대전 중구 석교동 13-4 민병근

(제 4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행정심판위원회 참가요구

청 분 대 조	
의	지방행정사무관
상 명	민 병 근

행심 01255-

당 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을 위해 '93 제8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 바,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귀직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니 별첨 심의안건을 검토하신 후 당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제 1 안 과 동 일 ”

붙임 :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안건 1 부. 끝.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수신처 : 거21, 28, 38

충청남도청

본 대 조	
직	행정심판수목관
성명	안 병 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은계 9호증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042) 251-2132 담당 : 명규식

문서번호 행심 01255-572

시행일자 1993. 12. ()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정 변경

취급		위원장
보존	10년	[Handwritten Signature]
부위원장		
간사장	과결	
간사	[Handwritten Signature]	
기안	명규식	

12.16

1. 충남 행심 01255-558(93.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93 제8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정이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통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 (변경) : '93. 12. 21(화), 14:30~

나. 장 소 : 전과 같음

다. 사건 및 당사자 : 전과 같음 끝.

12.11
14.00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수신처 : 각 행정심판위원, 더이(도시과장), 16(산림과장), 19(환경보호과장)
도 인사위원장(총무과장)

[Redacted] 변호사 진효근

[Redacted] 변호사 곽노준

[Redacted] 변호사 이상희

[Redacted] 정강용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직	행정심판과장
성명	안영호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공제 10호증의1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042) 251-2132 담당 : 명규식

문서번호 행심 01255-588

시행일자 1993.12. (>)

(경유)

수신 충청남도지사

참조

취급		위원장
보존		
부위원장	명규식	
간사장	명	
간사	명	
기안	명규식	

제목 행정심판 의결 통보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 제8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93.12.21)의 의결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의결내용
○ 93-4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정순영	아산군수	기각
○ 93-44,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처분 취소청구	최경순	천안시장	기각
○ 93-45,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등 청구	정·강·용	도인사회 위원장	기각

붙임 : 의결서 1 부. 끝.

권은대 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산 병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1993 12 21
부지사

- 사건 명 : '93 - 45,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등 청구
- 청구인 : 정강용 ([REDACTED])
- 피청구인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제 10 호 증 의 건

청구인이 '93.11. 8 처분청을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기한 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93.12 21)의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공채시험 불합격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며 합격자로서의 임용절차를 이행하라” 는 재결을 구함.
-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채시험에서 청구인의 평균 득점(78.33)은 합격선 (82.22 : 군필자 가점 포함)을 상회하는 점수임에도 5급 공채시험처럼 병역필자 가점제도가 없거나 9급 공채시험처럼 장애인 법정 채용비율을 적용하였다더라면 청구인은 합격할 수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위법·부당한 법적용으로 청구인을 불합격 시켰으며,

'93. 1.15 공고된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에 의하면 모집 총인원 271명의 100분의 2 이상인 5.42인을 선발하여야 하나 7급을 제외하고, 9급에서만

충청남도 지방행정사무관	[REDACTED]
심명안	[REDACTED]

4인을 채용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장애인 고용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1.42인 이상을 더 선발하여야 할 것임으로 청구인이 응시한 7급 행정직에서 최소한 1인 이상을 할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불합격 결정처분은 헌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고 합격자로서의 임용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군복무를 필한자에게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상 군복무자는 5%, 2년미만 군복무자는 3%의 가점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장애인으로서 병역을 면제 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계획 (93. 1.15 공고)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장애인고용의무적용 제외」 규정에 의하여 '93 공채 모집인원 총 271명(7급 : 행정직 41, 임업직 5), (9급 행정직 160, 임업직 5, 농업직 27, 보건직 8, 토목직 25)중에서 제외 직렬 (농업, 임업, 토목직) 62명을 제외하면 209명으로서 장애인 채용비율 100분의 2를 적용하면 4.18인 이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원 본 대 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안 병 호

에 의하면 “1인미만 또는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 는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4인을 9급 행정직에서 장애인 채용 인원수로 확정된 것은 장애인 채용 법정비율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아지며,

1997. 12. 21
3234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장애인을 어느직급 (7급 또는 9급)에서 모집하느냐 하는 사항은 임용권자가 그 기관의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일종의 재량사항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공채모집 공고상에 7급 행정직은 장애인 채용계획 인원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청구인이 이에 응시 하였다면, 청구인이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을 채용(4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1인 미만 또는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를 버린다” 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논외로 하고, 합격자로서의 임용절차는 불합격 결정의 취소나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절차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채 시험 불합격 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 본 대 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안 병

1993. 12. 2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리) 정 하 용

정 하 용

위원 이 기 형

이 기 형

” 이 호 종

이 호 종

” 유 일 언


유 일 언

” 김 종 선

김 종 선

” 김 용 효

김 용 효

권 분 태 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서명	안 병 

충 청 남 도

올해 // 호증의 /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042) 251-2132 담당 : 명규식

문서번호 법무 01255-589

시행일자 1993.12.20

(경유) (제 1 안)
신내부결재

참조

제 목 행정심판 재결

취급		도지사
보존	10년	11/3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인]	
법무담당관	[인]	
송무계장	[인]	

기안 : 명규식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 제8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93.12.21)의 의결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안건을 재결코자 합니다.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재결내용
○ 93-4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정순영	아산군수	기각
○ 93-44,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처분 취소청구	최경순	천안시장	기각
○ 93-45,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등 청구	정강용	도인사회 위원장	기각

붙임 : 재결서 1 부. 끝.

(제 2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행정심판재결서 송부

원본대조

각 지방행정사무관

심판관 [인]

1993. 12. 2
부이사

1. 귀하(직)를(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93 제8회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93.12.21)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첨과 같이 재결하였기 행정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를 송부합니다.

2. 이 사건의 재결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를 송부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재 결 서 1 부. 끝.



충 청 남 도 지 사

수신처 : . 더이(참조 : 도시과장), 19 (참조 : 환경보호과장), 도 인사위원회

. [Redacted] 변호사 진효근

. [Redacted] 변호사 이상혁

. [Redacted] 정강용

원본대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안 [Redacted]



충 청 남 도
재 결

응제 // 호증의지

- 사 건 명 : '93 - 45,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등 청구
- 청 구 인 : 정 강 용 ([REDACTED])
- 피청구인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1993 12 27
부기서

청구인이 '93.11. 8 처분청을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기한 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93.12 21)의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공채시험 불합격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며 합격자로서의 임용절차를 이행하라” 는 재결을 구함.
-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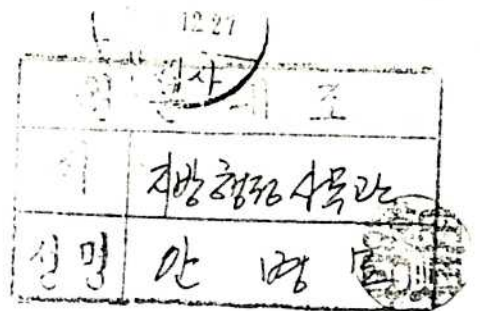
1.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채시험에서 청구인의 평균 득점(78.33)은 합격선 (82.22 : 군필자 가점 포함)을 상회하는 점수임에도 5급 공채시험처럼 병역필자 가점제도가 없거나 9급 공채시험처럼 장애인 법정 채용비율을 적용하였더라면 청구인은 합격할 수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위법·부당한 법적용으로 청구인을 불합격 시켰으며,

'93. 1.15 공고된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에 의하면 모집 총인원 271명의 100분의 2 이상인 5.42인을 선발하여야 하나 7급을 제외하고, 부급에서만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안

4인을 채용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장애인 고용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1.42인 이상을 더 선발하여야 할 것임으로 청구인이 응시한 7급 행정직에서 최소한 1인 이상을 할당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불합격 결정처분은 헌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고 합격자로서의 임용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군복무를 필한자에게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상 군복무자는 5%, 2년미만 군복무자는 3%의 가점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장애인으로서 병역을 면제 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계획 (93. 1.15 공고)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장애인고용의무적용 제외」 규정에 의하여 '93 공채 모집인원 총 271명(7급 : 행정직 41, 임업직 5), (9급 행정직 160, 임업직 5, 농업직 27, 보건직 8, 토목직 25)중에서 제외 직렬 (농업, 임업, 토목직) 62명을 제외하면 209명으로서 장애인 채용비율 100분의 2를 적용하면 4.18인 이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에 의하면 “1인미만 또는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는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4인을 9급 행정직에서 장애인 채용 인원수로 확정된 것은 장애인 채용 법정비율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이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장애인을 어느직급 (7급 또는 9급)에서 모집하느냐 하는 사항은 임용권자가 그 기관의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일종의 제량사항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공채모집 공고상에 7급 행정직은 장애인 채용계획 인원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청구인이 이에 응시 하였다면, 청구인이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을 채용(4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1인 미만 또는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를 버린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논외로 하고, 합격자로서의 임용절차는 불합격 결정의 취소나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절차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채 시험 불합격 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원본대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산병

1993. 12. 27.

93 年 12 月 27 日

충청남도지사

정반입니다

1993 12 27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제 경 흠



원본 퇴조	
직	지방행정수목관
성명	안병









議 決 書

을제 1호 증의 2


93年度 第2回 地方公務員 任用試驗을 別添 計劃과 같이 施行하기로 議決함.

1993. 4. 1.

忠 清 南 道 人 事 委 員 會

委 員 長	朴 贊 武	
副 委 員 長	李 鍾 賢	
委 員	金 正 仁	
委 員	趙 春	
委 員	宋 錫 祥	
委 員	朴 鍾 淳	
委 員	盧 奎 來	
幹 事	朴 永 同	

別 添 : 93年度 第2回 地方公務員 公任試驗 施行計劃 1部. "끝"

원 본 대 조	
직	지방행정혁신관
성명	안 명 

서증제출및 인부표

사건 : 94구 680

원고 : 정 강 용

피고 : 충청남도지사의 1

번호	서 증 이 름	인 부	번호	서 증 이 름	인 부
을제1호증의 1	시험 시행 계획		을제5호증의 3	최종합격자 명단	
' 2	시험 시행계획 의결서		' 4	' 공고문	
' 3	시험 시행 공고문		을제6호증	행정심판 청구서	
을제2호증의 1	공고 의회		을제7호증	재결청 송부	
' 2	공고 대장		을제8호증	행정심판 개최통지	
' 3	신문 공고문		을제9호증	행정심판일 변경통지	
을제3호증의 1	원서 접수부		을제10호증의 1	행정심판의결 통보	
' 2	원고 응시원서		' 2	' 의결문	
을제4호증의 1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을제11호증의 1	행정심판 재결 통보	
' 2	' 의결서		' 2	' 재결문	
' 3	' 명단		을제12호증의 1	제2회 시험시행 계획	
' 4	시험 성적부		' 2	' 의결서	
' 5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 3	공 고 문	
을제5호증의 1	최종합격자 결정				
' 2	' 의결서				

위 목록과 같이 서증을 제출합니다.

1994. 3. . 원(피고)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안 병 모



위 인부표를 1994. . 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십시오.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법원사무관 문 용 민

위와같이 인부합니다.

서증제출및 인부표

사건 : 94구 680

원고 : 정 강 용

피고 : 충청남도지사의 1

번호	서 증 이 름	인 부	번호	서 증 이 름	인 부
1	행정심판 청구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11	행정심판 참가신청서	성립인정
2	청구서 재결 송부 통지	성립인정	12	재결청 변경 신청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3	7급행정직 장애인 채용의무 이행 신청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13	행정심판위원 제척신청서	성립인정
4	취소심판 청구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14	보 충 서 면(2)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5	행정심판 답변서	성립인정	15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자 변경	성립인정
6	반 론 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16	보 충 서 면(3)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7	보 충 서 (1)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17	행정심판 재결서	성립인정
8	증거서류및 첨부서류	공성부분만 인정	18	탄원서및 회신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9	구술심리 허가 신청서	성립인정	19	충청남도지사 면담 신청서	성립인정
10	증거조사 신청서	성립인정	20	탄원서 회신	.

위 목록과 같이 서증을 제출합니다.

1994. . . 원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인)

위 인부표를 1994. . . 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십시오.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법원사무관 문 용 민

위와같이 인부합니다.

1994. = 3. . . 피고 소송수행자

안 병 모



한편 鄭씨는 지난 8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상담을 신청했으며 협회측은 障礙友권익 문제연구소, 전국특수교육학과의연합회 등 7개 장애인 관련단체로 구성된 鄭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共對委)를 결성하고 鄭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共對委측은 이 성명서에서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채과정에서 2%의 의무고용률을 직급별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 충청남도는 鄭씨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할 것 △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共對委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군복무 가산점 특 전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은 1천7백4명인데 반해 고용현황은 5백3명으로 겨우 0.58%의 의무고용률을 보여 정부기관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끝)

28년

참여연대 인권 자료		
등록일	분류기호	사료

군복무자 공무원 공채시
가산점 폐지에 관한 특별건의 (안)

1 9 9 3 . 1 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요 지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군복무자 가산점제도 폐지

1. 가산점제도 시행현황

가. 근거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용시 가점)

나. 가산점 시행현황

직급별	가 산 점 수 (평 균 점 기 준)				비 고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2년이상군복무자	2년미만군복무자	
6 ~ 9급	10%	8%	5%	3%	군면제자 (장애인 포함)및 여성 :가점없음

- 주로 7급내지 9급 공채에 적용하며
- 합격후 임용시 호봉책정시 3호봉 (면제자 · 여성 : 1호봉)

2. 문제점

가.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에 위배

- 근거 : 헌법 제32조 제6항
- 필기시험에 있어 군복무자에 대한 가점 (3~5점)적용은 국민개병제(국방의의무) 하에서 볼때 기회평등에 위배

나. 채용전 및 임용후의 이중특별 예우

- 군복무자의 경우 채용전 시험시 가 1~1점 (3~5점)적용 및 임용후 3호봉 책정 (면제자·여성:1호봉)군면제자 등에 비해 이중 특별예우

다. 군면제자 (장애인포함) 및 여성의 채용시험시 불이익

- 현행과 같이 공무원 공채시험시 군면제자및 여성의경우 가점적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시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 또한 국방의 의무이행에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선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이시기에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군면제자 및 여성들의 경우
- 국가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즉, 실력을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필기시험에 출발부터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민시대에 맞지 않은 군사문화의 대표적 잔재임.

3. 개선 방안

가. 가산점제도 폐지

- o 공무원의 공개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출발선상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실력으로 공개경쟁을 할수 있도록 군복무자의 가산점제도를 폐지
- o 단,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은 인정하되 임용시의 경우 현행대로 승급호봉 인정

나. 관련법률개정

- o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용시 가점)
- 군복무자등에 부여되는 가점제 (3~5점) 폐지

※ 참고사례

- o '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채시 장애인 정강용 (31, 지체장애3급)씨는 7급 행정직에 응시 필기시험 성적은 78점을 획득했으며 당시 합격점은 82점으로 이는 5%의 가점을 받은 군복무자보다 오히려 1점정도 우수한 실력을 보였으나
- o 정강용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면제대상자가 되어 5%의 가산점을 받지는 군복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공채에 응시, 결과는 불합격으로 처분되어
- o '93.12현재 정강용씨는 이에 부당함을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로 '93.12.21 동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o 따라서 정강용씨와 같이 장애로인한 군복무대상제외 및 여성등의 공무원공채에 응시할 경우 순수한 실력으로 평가 받아야 할 필기시험에서 군복무의 유무에 따라 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 및 평등권에 위배됨.

성지순	용시번호	성명	거기			목적			목적			명료	과거		목적
			구이	업이	각기	공유	헌민	계민	역시	진신	신택		계	업호	
19	1108	인임수	75	65	85	85	90	85	90	60	75	710	78.88	5	83.88
19	1336	허원	65	55	90	75	80	85	90	75	95	710	78.88	5	83.88
24	1341	조정현	60	75	80	85	100	90	85	75	75	725	80.55	3	83.55
24	129	지명국	70	65	80	75	90	85	85	65	90	705	78.33	5	83.33
24	477	이남리	75	65	80	65	90	90	75	75	90	705	78.33	5	83.33
24	605	김종일	80	85	80	75	70	85	75	65	90	705	78.33	5	83.33
24	1165	오성환	75	60	75	80	100	75	75	80	85	705	78.33	5	83.33
24	1304	김나영	75	75	80	65	90	90	80	80	85	705	78.33	5	83.33
29	1218	백광용	75	80	80	80	90	80	90	60	90	705	78.33	5	83.33
30	147	박우현	65	80	85	70	80	95	85	70	70	720	80.00	3	83.00
30	396	김영환	70	60	80	75	85	85	80	65	100	700	77.77	5	82.77
30	416	최봉래	75	80	75	70	90	70	80	85	85	700	77.77	5	82.77
30	485	박익현	70	80	85	75	95	80	75	80	85	700	77.77	5	82.77
30	613	김정원	50	70	90	80	95	85	85	65	85	700	77.77	5	82.77
30	616	김범수	70	90	85	80	95	85	85	55	90	700	77.77	5	82.77
30	731	이인경	85	60	85	65	100	85	75	55	85	700	77.77	5	82.77
30	940	김재원	80	65	90	55	95	80	90	60	90	745	82.77		82.77
30	462	양일권	85	95	80	70	85	90	80	90	85	700	77.77	5	82.77
30	1034	이종서	75	100	90	85	75	80	75	65	80	715	79.44	3	82.44
40	436	양현균	70	80	90	70	90	85	75	55	80	715	79.44	3	82.44
40	552	김재원	65	65	80	75	90	90	85	50	95	695	77.22	5	82.22
40	555	김원복	65	75	90	75	100	65	75	80	80	695	77.22	5	82.22
40	649	송인성	70	45	75	75	90	90	85	70	85	695	77.22	5	82.22
40	886	김포환	75	75	70	65	90	80	95	70	85	695	77.22	5	82.22
40	1318	정영기	90	70	90	70	90	80	75	80	85	695	77.22	5	82.22
16	1041	김정환	70	75	65	85	90	90	80	70	70	695	77.22	5	82.22

김정환 112.33

성적순	유시번호	성명	과목										평균	가점		부점	결정	
			국어	영어	국기	국유	헌법	생역	생리	지식	신체	계		원호	기능			
111	869	우근제	50	65	75	70	90	85	70	90	70	90	665	73.88	5		78.88	
111	1044	조오영	65	65	75	70	80	70	80	80	70	90	665	73.88	5		78.88	
111	1302	김종오	80	80	65	75	85	70	80	75	45	90	665	73.88	5		78.88	
111	1305	이상유	65	85	65	80	90	80	80	75	60	65	665	73.88	5		78.88	
129	66	조성삼	60	75	75	60	95	90	90	85	50	90	680	75.55	3		78.55	
129	332	이병우	80	65	80	65	85	80	80	60	70	95	680	75.55	3		78.55	
129	756	박권우	55	80	70	70	95	90	90	65	60	95	680	75.55	3		78.55	
129	927	김인수	75	65	80	80	75	80	80	90	45	90	680	75.55	3		78.55	
133	8	이범서	70	80	80	75	75	75	75	75	45	85	660	73.33	5		78.33	
133	63	류지침	65	65	85	55	95	90	75	75	60	70	660	73.33	5		78.33	
133	202	정현삼	80	40	70	70	90	90	75	90	60	70	660	73.33	5		78.33	
133	262	이연중	80	35	85	70	90	90	80	75	60	85	660	73.33	5		78.33	
133	311	문침인	75	70	65	60	95	90	80	80	50	90	660	73.33	5		78.33	
133	399	정감용	85	65	80	65	95	90	80	80	50	75	660	73.33	5		78.33	
133	415	최석재	60	60	80	65	85	85	65	75	70	95	705	78.33			78.33	
133	435	김인영	60	75	85	75	90	75	85	90	60	95	660	73.33	5		78.33	
133	463	민경환	65	75	75	70	95	75	60	75	75	85	705	78.33			78.33	
133	488	박종석	70	60	70	65	90	80	85	60	55	90	660	73.33	5		78.33	
133	529	백희삼	70	70	75	80	85	85	85	60	60	80	660	73.33	5		78.33	
133	740	최종문	60	55	70	65	95	90	70	75	55	90	660	73.33	5		78.33	
133	760	이호기	60	55	75	70	95	90	90	90	50	85	660	73.33	5		78.33	
133	772	유병규	80	65	85	70	95	75	75	75	65	90	660	73.33	5		78.33	
133	1090	박인순	70	65	85	85	95	70	70	70	50	75	660	73.33	5		78.33	
133	1146	송침진	55	45	70	95	90	90	75	75	35	70	660	73.33	5		78.33	
133	1244	최우영	90	15	75	60	90	90	80	80	55	90	660	73.33	5		78.33	

<p>障碍人雇傭促進 등에 관한法律</p> <p>第 3 章 障碍人雇傭促進</p>	<p>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第 34 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障碍人 雇傭義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障碍人의 所屬 公務員 定員의 100 分の 2 以上 雇傭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p> <p>②各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障碍人의 公開採用人員의 100 分の 2 以上 採用되도록 試驗을 實施하여야 한다.</p> <p>③第 1 項과 第 2 項의 경우 職務의 性 格上 障碍人의 勤務가 不適合한 職務分野, 職種, 職級 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 35 條 (非業主의 障碍人 雇傭義務)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數 以上의 非</p>	<p>제 31 조 (장애인공무원 고용 계획 등의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34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류별 및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32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법 제 3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p>	<p>제 4 조 (장애인공무원 고용 계획 등의 제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영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 월 31 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공무원임용령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의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p>

성명서

전국 4백만 장애인들은 93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정강용'씨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의 적용 및 행정관행에 대하여 규탄하고 이의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88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정강용'씨는 6년간 취업을 위해 여러차례 공.사기업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필답고사에서는 타응시생보다 월등한 성적을 획득하고서도 면접과정에서 탈락하는 어려움을 감당하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만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93년 9월 8일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임용 공개 경쟁에 응시 78.33을 취득하였다.

당시 합격점으로 발표된 82.22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근거 5점 가산이 적용된 것으로 장애로 인해 부득이 병역 면제된 장애인들에게는 위법부당한 법 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의한 임용의무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측은 7급 공채과정에 2%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그 법의 충실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정강용'씨가 불합격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 동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34조 신체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장애인 2%의 의무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0.58%에 불과한 실정으로 술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위법부당한 법 적용과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기업에 떠맡기기 보다 국가기관에서 먼저 술선해서 침해당한 장애인의 노동권회복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자와 충청남도 지사는 지금이라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정강용'씨에 대한 불합격 처리를 취소하고 국민과 4백만 장애인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 리 의 주 장

총무처와 충청남도는 '정강용'씨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하라!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

정부는 장애인임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라!

1994. 12. 14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 의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Tel : 242-6197
Fax : 216-0683

참가단체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기독교교회협의회장애인인권위원회, 한국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전장애인밀알선교회, 대전미문선교회, 전국지체장애인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사설

장애이복기

군필 가산점 재고되어야 한다

평등권의 침해 요소 짚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제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논란이 한참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6.25라는 뼈아픈 기억과 함께 지구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확실한 '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간 할 말 다 못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문제였다.

문제제기가 여성계에서 이루어졌고, 가산점 제도에 의한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만은 결코 아니다. 아니 제도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마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니라 장애인, 혹은 장애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군역이 면제된 사람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가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7급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제도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대부분 보상론을 내세운다. 한참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군대에 갔다옴으로써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에 대한 보상으로써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여성이나 장애인보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론은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민개병제'란 점에서 논리가 약하다. 국민개병제란 일정한 연령에 달한 전 국민이 군복무의 의무가 있으며, 특정한 조건을 결한자,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등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며, 또한 특정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취업의 기회를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는 논리가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이란 논리로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설령 여성과의 상대적인 내용에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군복무가 불이익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군복무기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을 위해 현재 9급 공무원 채용에 있어 장애인들만의 상대적 공채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9급 공무원 채용에 있어 장애인은 군필자 가산제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고용을 늘이기 위한 특혜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7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혹자는 7급 공무원 시험도 장애인만으로 보게하여 가산점 제도의 불이익을 피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진보에 걸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불평부당을 장애인에 대한 특혜로 풀어보고자 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여성계의 이번 문제제기에 장애인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장애인 기본법 논의 시작하자

폭넓은 접근 속에서 대안 찾아야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논의를 둘러싸고 그동안 수면하에서만 논의되던 '장애인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 요구가 가까운 시일내에 전면부 부상할 가능성이 조짐스럽게 타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계에서는 생소하게 들리는 장애인기본법은 이미 몇몇 나라에서 구체적인 제정 움직임이 있거나 제정을 바친 상태이다.

기본법은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가장 필요한 법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논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

별의 철폐라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계속 실시할 경우 장애인의 '기생 계층'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양식 이상이 아니며 결국 이땅의 장애인들은 언제나 '최소한의' 권리에만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법은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평등적 권리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막연한 '평등권'이 아니라 구체적

사회복

장애등급

전 보건소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장인협·인경석, 이하 심의위)'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의 최종안이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 통과됐다.

<관련기사 251호>

발전방향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분야의 경우 현행 장애등급제를 재검토하여 장애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앞으로 각종 건축물

업무상 재해 인

VDT 증후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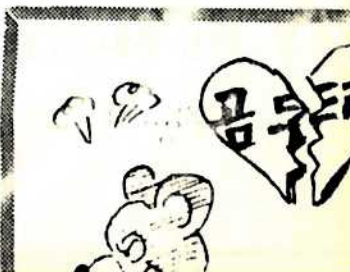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폭넓게 인정된다.

또 컴퓨터를 장기간 다뤄 발생하는 어깨결림증 등 이른바 VDT증후군을 포함한 6종의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새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인정기준은 과로의 개념을 발병전 3일 이상 일상업무보다 업무량이 30%이상 많았

만평



4.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인인 부지사
이므로 공정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결청 변경신청, 이해관계인 참가신청, 구술심사 허가신청, 증거조사
신청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 행정심판위원장인 부지사는 인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제척신청
을 받아들여 당시 기획관리실장인 정하용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리토록
하였으며

나. 재결청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도지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공임시험의 시행및
합격자를 결정 하였으므로 상급 감독청인 도지사를 재결청으로 하였으며

다. 이해관계인 참가신청은 법률상으로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자에
한하여 참가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한국장애인협회 충남지부장
이건희외 수명이 참가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는 없지만, 심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의 동의를 얻어 참관시켰
으며

라. 구술심리허가 신청은 심판당일 원고 정강용에게 충분한 구술심리 기회
를 부여 하였고

마. 증거조사신청은 충청남도의 장애인 고용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는 상세한 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득점상황,
등수등을 모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 것으로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5. 93. 12. 22 충청남도의 실국장(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내무국장 이종현) 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해 달라는 탄원서에 대한 회신 내용중 상반기에는
7급행정직 공채계획이 없으며 하반기에 공채할 경우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서도 받지 못하였고 내부결재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동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는 다음날 원고가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위원장 직무대리) 을 방문하자, 「내무국장과 협의 94년 7급 행정직 공채시 장애인 채용을 배려하겠다」는 대화는 사실이지만 그 후, 94년도 충원 계획 수립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행정 7급 수요가 없어 공채계획을 수립치 않았습니다.

나. 93년 12월 현재 93년도에 7급 행정직 39명을 공채하여 6명만이 신규임용되었고 33명이 미임용되었으며, 7급 세무직도 50명을 공채하였으나 24명만이 임용되었을 뿐 26명이나 미발령된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을 계속 공채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남아있는 미임용자가 해소되는 상황을 감안, 필요시 하반기에 7급 행정직을 소수인원이라도 공채하면서 장애인 채용도 행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려해 보겠다는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지사) 의 결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다. 그 내용을 원고에게 확약서를 교부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며, 내부결재 사항을 공지할 절대적인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증거목록 】

1. 을제1호 증의 1 : 시험 시행계획
2. 을제1호 증의 2 : 시험 시행계획 의결서
3. 을제1호 증의 3 : 시험 시행 공고문
4. 을제2호 증의 1 : 공고의뢰
5. 을제2호 증의 2 : 공고대장
6. 을제2호 증의 3 : 신문공고문
7. 을제3호 증의 1 : 원서접수부
8. 을제3호 증의 2 : 원고 응시원서
9. 을제4호 증의 1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0. 을제4호 증의 2 : 필기시험 합격자 의결서

11. 을제4호 증의 3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2. 을제4호 증의 4 : 필기시험 성적부
13. 을제4호 증의 5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14. 을제5호 증의 1 : 최종합격자 결정
15. 을제5호 증의 2 : 최종합격자 의결서
16. 을제5호 증의 3 : 최종합격자 명단
17. 을제5호 증의 4 : 최종합격자 공고문
18. 을제6호 증 : 행정심판 청구서
19. 을제7호 증 : 청구서 재결청 송부
20. 을제8호 증 : 행정심판 개최 통지
21. 을제9호 증 : 행정심판일 변경 통지
22. 을제10호 증의1 : 행정심판 의결 통보
23. 을제10호 증의2 : 행정심판 의결문
24. 을제11호 증의1 : 행정심판 재결 통보
25. 을제11호 증의2 : 행정심판 재결문
26. 을제12호 증의1 : 제2회 시험시행 계획
27. 을제12호 증의2 : 제2회 시험시행 계획 의결서
28. 을제12호 증의3 : 공 고 문

1994. . 3.

피 고 : 1. 충청남도지사
2.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인 : 지방행정사무관 안 병
지방행정주사보 곽 근 수



응시원서 (원본)

응시 3호증의지

총청남도지사 귀하
총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장

나는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 1993년 7월 5일

수입증지불이



주소	[Redacted]		(통번)	DDD 지역번호: 042)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종신학	대학교	1988년 2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4년)	졸업, 수료, 중퇴, 재학
대학원	대학원	19년	대학교 대학원	졸업, 수료, 중퇴, 재학
경력	19년	월	일부터	종사
	19년	월	일까지	
응시지역	충남	가 산 기 표 란		
		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	군복무기간 19년
선택과목	지방행정	급		2년이상 복무
				2년미만 복무
응시계급	7급	성명	(한글) 정강용	성별 남
응시직렬	(행정 직 직류)		(한자) 鄭綱溶	
응시번호	부호	399	생년월일	1962년 3월 / 일생 (3 / 세)
			주민등록번호	[Redacte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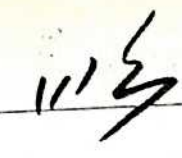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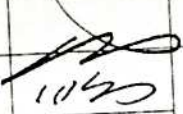
응시계급	7급	응시원서 (부분)	
		7급 행정직 시험	
응시직렬	(행정 직 직류)	성명	(한글) 정강용
			(한자) 鄭綱溶
응시번호	부호	399	생년월일
			1962년 3월 / 일생 (3 / 세)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원본대조
직 지방행정사무관
사 비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 (042) 253-9054 전충

문서번호 인위 12124 - 48
시행일자 1993. 9. 9. (5)

취급		위원장
보존		 경광훈 ['93 - 39 : 1 '92 - 33 : 1 C
부위원장		
간사		
서기	이소영	
기안	곽근수	홍기영 ['93 - 39 : 1 '92 - 33 : 1 C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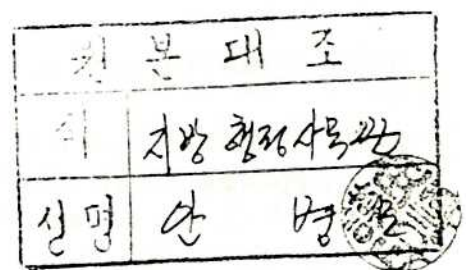
수신 제1안 내부결재

참조

제목 '93. 제1회 7급행정직 공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공고제1호('93. 1. 15)에 의거 93. 8. 8(일) 시행한 '93.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필기시험 실시결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합격자 및 동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일시 : '93. 9. 10(금)
2. 공고장소 : 도청 및 시.군청 게시판
3. 공고안 : 별 지



붙임 : 가. 의결서 1부.
나. 공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93.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 송부

'93. 8. 8(일) 시행한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붙임 : 공고문 1부. 끝.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수신처 : 더 01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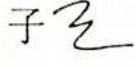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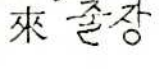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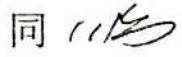
議 決 書

우-7 4호증의2

忠清南道 人事委員會 公告 第1號('93.1.15)에 의하여 '93.8.8(日) 施行한 '93.第1回 7級 行政職 地方公務員 公任筆記試驗 實施結果 地方 公務員 任用令 第50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格者를 決定하고 同 合格者에 對한 面接試驗 施行計劃을 別添案과 같이 公告하기로 議決함.

1993.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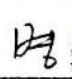
忠 清 南 道 人 事 委 員 會

委 員 長	朴 贊	武 
副 委 員 長	李 鍾	賢 
委 員	金 正	仁 
委 員	趙 春	子 
委 員	宋 錫	祥 
委 員	朴 鍾	淳 
委 員	盧 奎	來 
幹 事	朴 永	同 

添 附 : '93.第1回 7級行政職 地方公務員 公任 筆記試驗 合格者決定 및 面接試驗 施行計劃 1部. 끝.

제청서

제청서

심명  명 

적순	응시번호	성명	과목별										평균	가점		특점	결정	
			국어	영어	국사	국문	헌법	행법	영학	전산	선택	계		원호	기능			
1	749	김준호	95	85	75	90	90	95	95	85	80	95	790	87.77	5		92.77	합격
2	853	정낙도	80	80	85	75	100	85	80	60	90	735	81.66	5		86.66	합격	
3	522	김진구	70	85	85	85	95	95	75	65	75	730	81.11	5		86.11	합격	
3	1323	정해교	80	80	75	75	90	80	80	75	95	730	81.11	5		86.11	합격	
5	43	한경수	80	85	75	80	95	85	75	60	90	725	80.55	5		85.55	합격	
5	62	이철구	75	65	95	75	90	90	80	70	85	725	80.55	5		85.55	합격	
5	213	최기호	65	80	80	70	90	95	85	75	85	725	80.55	5		85.55	합격	
5	697	송덕현	80	60	85	80	95	90	80	65	90	725	80.55	5		85.55	합격	
5	1148	이석희	85	55	85	75	100	95	85	65	80	725	80.55	5		85.55	합격	
5	1317	안호	65	60	80	75	95	90	80	55	80	680	75.55	10		85.55	합격	
11	1075	김영영	90	60	90	80	100	85	80	70	85	740	82.22	3		85.22	합격	
12	448	장동훈	80	60	80	80	90	90	85	60	95	720	80.00	5		85.00	합격	
12	727	오수만	70	60	85	60	85	90	75	55	95	675	75.00	10		85.00	합격	
14	342	이재웅	65	70	80	70	95	70	85	40	95	670	74.44	10		84.44	합격	
14	353	이선구	65	70	85	90	90	90	70	70	85	715	79.44	5		84.44	합격	
14	439	박종권	70	70	90	90	85	85	80	60	85	715	79.44	5		84.44	합격	
14	467	박연숙	75	75	90	80	100	80	90	85	85	760	84.44			84.44	합격	
18	237	이덕환	85	75	75	70	95	95	85	75	75	730	81.11	3		84.11	합격	
19	315	최제신	80	90	65	70	80	80	85	70	90	710	78.88	5		83.88	합격	
19	347	이해선	80	90	60	85	80	80	80	75	80	710	78.88	5		83.88	합격	

경문대학교

지방행정사무원

합격

111	1044	1302	1305	66	332	756	927	8	63	202	262	311	399	415	435	463	488	529	740	760	772	1090	1146	1244	753
조오영	김종오	이상운	조성삼	이병우	박원우	김인수	이범석	류지창	정현섭	이연중	문창일	정강용	최석재	김원영	민경철	박종석	박종석	박화섭	최종문	이호기	유병규	박인순	송창현	정용달	김현석
65	80	65	60	80	55	75	70	65	80	80	75	85	60	60	65	70	70	70	60	60	80	70	55	80	75
65	80	85	75	65	80	65	80	85	40	35	70	70	65	65	75	60	60	75	70	55	65	85	45	80	70
75	65	65	75	80	70	80	80	55	70	85	65	60	80	85	75	85	70	80	65	70	85	95	70	60	75
80	75	80	60	65	95	75	75	95	90	90	70	95	75	95	95	80	80	65	90	95	70	80	90	95	80
70	75	65	90	80	90	80	75	90	75	80	80	80	75	85	60	85	85	70	90	75	70	80	80	80	85
70	75	80	85	60	65	45	45	60	60	50	50	50	70	60	75	55	60	55	50	65	50	35	55	60	60
90	90	65	90	95	95	90	85	70	85	90	75	75	95	95	85	90	80	90	85	90	75	70	90	80	80
665	665	665	680	680	680	680	660	660	660	660	660	660	705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73.88	73.88	73.88	75.55	75.55	75.55	75.55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8.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73.33
5	5	5	3	3	3	3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3
78.33	78.88	78.88	78.55	78.55	78.55	78.55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33	78.00

2012 2월 21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을제 5 호증의1

우 301-763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287 전화 (042) 253-9054 전승

문서번호 인위 12125 - 53
 시행일자 1993. 10. 11. (3)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민시전송	위원장
보존		11/13
부위원장		
간사	11/13	
서기	안병모	
기안	곽근수	(일괄기안 4건)

제 목 '93.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임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8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공고제1호('93. 1. 15)에 의거 93. 8. 8(일) 시행한, '93.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실시결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일정 : '93. 10. 11(月)
2. 공고방법 : 도, 시, 군 게시판 공고및 개별통지
3. 공고(안) : 별 지

붙 임 : 공고(안) 1부. 끝.

(제 2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93.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임시험 최종합격 통지

1. 귀하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한 '93. 제1회 7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최종합격 하였으므로 통지하니

2. 별지 공고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어진 기간내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회키 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자 등록을 마회키 조
직	지방행정43과
인명	선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수신처 : 논산군 연산면 표정2구 427 박우현외 38명